

##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)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”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·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·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,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